KMA 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내 가족처럼 환자를 내 생명처럼"

㉾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8층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37/전송(02)796-4487
[정책국] 정책국장 최윤배[6530] 정책팀장 박우민[6532] 팀원 이병인[6537]/E-mail: bo33jo@nate.com

문서번호 대의협 0615-10259
시행일자 2018. 1. 9.
수 신 수신처참조
참 조
제 목 2017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협조 요청(국세청)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국세청 원천세과-1323(2017. 12. 20.)

3. 국세청에서 다음과 같이 「2017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」 안내 협조요청이 있는바,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관련규정 :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3
나. 요청사항 :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
  - (제출자료) 본인부담금 의료비 자료 제출
  - (제출대상기한) 2017. 1. 1. ~ 2017. 12. 31.
  - 연도 중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까지의 자료를 제출
다. 제출방법 :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한 제출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붙 임 : 「2017년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」관련 국세청 공문 및 안내문 각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합니다"

(수신처)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, 각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